



1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산에 따른 상륙거부 조치 등

일본 입국 시 각종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참조

(1) 상륙거부 대상지역으로부터의 입국

상륙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41개국·지역에 체재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륙을 거부 (상세한 사항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방지에 따른 상륙거부에 대하여](#)」를 참조

○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입국·재입국을 허가하는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재입국 허가(간이 재입국 허가 포함)에 의한 재입국
- ②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신규 입국
- ③ 「외교」 또는 「공용」의 재류자격을 취득하는 자
- ④ 미즈기와 대책강화와 관련된 새로운 조치(29)에 의거하여 신규입국하는 자 → 아래 2참조
- ⑤ 친족방문 또는 지인방문(친족에 준하는 관계가 인정되는 자·일본방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으로 「단기체재」의 재류 자격을 취득하는 자
- ⑥ 입국목적에 공익성이 인정될 때 (예를 들어, 백신개발 기술자 등)
- ⑦ 기타 인도적인 배려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상륙거부 대상지역 이외로부터의 입국

현재, 전세계를 대상으로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과 동등한 사정이 있는 자에 한해 비자 발급

※ 현재, 재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입국 전에 재외공관에서 비자 취득이 필요

2 외국인의 신규 입국제한 재검토 (미즈기와대책 강화에 따른 새로운 조치 (29))

아래 (1), (2) 또는 (3)의 신규입국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 소재하는 초청책임자(해당 외국인을 고용 또는 사업·홍행을 위해 초빙하는 기업·단체 등)가 후생노동성의 입국자 건강확인시스템(ERFS)에서 소정의 신청을 완료하고 비자발급을 받은 경우 신규입국을 원칙적으로 인정.

- (1) 상용·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간 체류(3개월 이하)의 신규 입국
- (2) 관광목적의 단기체류를 위한 신규입국 (여행사 등을 초청책임자로하는 경우에 한함)
- (3) 장기간 체류의 신규 입국

○ 상세한 내용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외국인의 신규 입국제한 재검토에 대하여](#)) 를 참조